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268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6.

발 의 자:성일종・金炳旭・김상훈

김선교 • 박덕흠 • 엄태영

이명수 · 이용호 · 이종배
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. 통계청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층 비율이 40.5%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 17.1%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임. 특히 최근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 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상황임.

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례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을 구체화 하고,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·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 항,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야 한다.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"을 "어업인이 아닌 자(이하 "비어업인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을 위반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획·채취기준에는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할 수 있는 방법, 어구, 시기, 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비어업인은 이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획·채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비어업인이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

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 획·채취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제18조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18조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한) ① 「수산업법」 제2조 제한) ① ------제12호에서 정하는 <u>어</u>업인이 -----어업인이 아닌 자(이하 "비어업인"이라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자원을 포획・채취하여서는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을 아니 된다. 위반하여-----② 제1항에 따른 포획・채취기 <신 설> 준에는 수산자원을 포획・채취 할 수 있는 방법, 어구, 시기, 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 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 설>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 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기준을 따 로 정할 수 있으며, 비어업인은 이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 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6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 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 획・채취한 자

3. ~ 10. (생략)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획·채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6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5조(벌칙) 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어업인의 수 산자원 포획·채취기준을 위 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한 자
- 3. ~ 10. (현행과 같음)